

2025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

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지원 사업

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업,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

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. 꼭! 전화주시고 방문해 주세요!

지원대상

- 중위소득 100% 미하 다문화가족 자녀
교육급여 수급 시 지원율(중위소득 50%이하)
- 7~18세 다문화가족 자녀
(2007. 1. 1. ~ 2018. 12. 31.)
- 국내 거주 중이며 한국국적을 가진
위해 혼당하는 다문화가족 자녀
- 학생은 학교급별로 초등, 중등, 고등에 따라 지원
- 학교 밖 청소년일 경우 아래 기준으로 분류
초등(7~12세), 중등(13~15세), 고등(16~18세)

우선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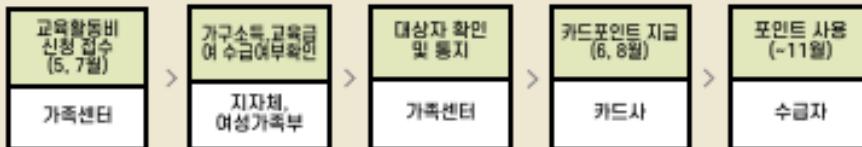
- 학교 밖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및
차상위계층 기구
- 한부모가정, 조손가정, 다자녀가정(2자녀미상),
가구원 중 장애 및 요양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
- 벽지 지역 거주 가정
(청원면 혼단리, 안흥면 소사리, 강림면 강림리,
서원면 창촌리/유현리, 공근면 수백리)
- 중위소득 기준 저소득 순위 가구 자녀

제출서류

- 교육활동비 신청서
- 부모님(결혼이민자) 기준 기본증명서(상세) 1부
- 부모님(결혼이민자) 기준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
* 모든 서류는 신청자 및 가족구성원의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기된 상세증명서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.

절차



•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시 필요 구비서류

신청	구비서류 (공통)	추가
부모님, 본인	<p>1.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-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파일 출력 혹은 센터 방문하여 작성</p> <p>2. 부모님(결혼이민자) 기준 기본증명서(상세) 1부 - 한국 국적 취득자만 해당, 국적 없을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요.</p> <p>3. 부모님(결혼이민자) 기준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 - 결혼이민자 기준으로 발급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+신청 자녀 기준으로 발급 ※신청 자녀가 A,B 총 2명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는 총 3장 필요, 배우자 기준 증명서 1부 + A자녀 증명서 1부 + B자녀 증명서 1부 (다문화자녀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)</p> <p>4. 주민등록등본 1부 -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정부24 홈페이지 발급</p> <p>5.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25년 4월 이후 납부확인서) - 정부24 혹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혹은 건강보험공단에 신분증 지참하여 발급(횡성장소) / 혹은 회사에서 발급 - 부, 모 각각 1부 / 생계·거주 같이하는 성인자녀 있을 경우 각 1부</p> <p>6. 소득금액증명서 / 사실증명서 (해당자만 발급)</p>	
3촌 이내 혈 족	<p>7. 사실혼관계확인서 /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(해당자만 발급)</p> <p>8.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(해당자만 발급)</p>	급증대인 인 동의서 및 웨이파

- 모든 서류는 **신청자 및 가족구성원의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기된 상세증명서**로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교육활동비는 **학원비/학습비로 사용 불가능**하며, 사용하여 환수조치 될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상황에 따라 위 내용 외의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를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않아 신청이 지체될 경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험수로 회원가입 해야 하며 이후 안내에 따라 프로그램 신청을 해야 합니다.
- 센타 방문 전 꼭 센터에 전화하여 방문 예약 부탁드립니다.
- 서류 발급이 어려울 경우 공동인증서를 USB에 담아 센터에 방문하면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.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**반드시 25년도 4월 고지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.**
- 신청자(부모님 혹은 대리인) 본인 명의의 NH농협 카드가 없을 시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.
- 신청 완료 후 60일(최대 90일) 이내에 수급결과 여부가 통지됩니다.
- 2차에 나누어 포인트를 지급하지만 1차 신청기간에 인원이 초과될 경우 위의 우선대상 기준에 따라 수급자를 선정하며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
